

육음번호 구성내역서

① 연월일	② 구분	③ 육음번호	④ 부위명	⑤ 이력번호	⑥ 구성개체수 (구성번호수)	⑦ 등급
2020-09-08	국내산돼지고기	L12009085265001	지육	190002900886	5	-
				190009903503		
				190015201600		
				190018600807		
				190031200989		

유의사항

- ① 연월일은 육음번호를 구성한 연월일을 적습니다.
- ② 구분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종류인 국내산쇠고기, 국내산돼지고기, 수입산쇠고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③ 육음번호는 별표 14에 따라 조합한 숫자를 적습니다.
- ④ 부위명은 육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를 적습니다. 다만, 국내산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쇠고기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.
- ⑤ 이력번호는 육음을 구성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해당되는 모든 이력번호를 적습니다.
- ⑥ 구성개체수는 육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.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이력번호의 수가 5마리인 경우에는 "5"로 적습니다. 국내산이력축산물 중 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이력번호의 수를 적습니다.
- ⑦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등급별 구성인 경우에 해당 이력번호별 등급을 적습니다.

제 20200907-17 호

도 축 검 사 증 명 서

1. 가축의 종류: 돼지 (흑돈: 0두) 이용

2. 두수 및 이력번호: 10 두 (190009903503)

3. 중 량: 지 육: 771 kg 내장 등 기타: kg

4. 작 업 장 명: 제주양돈농협축산물종합유통센터 (제주LPC)

5. 검 인 번 호: 제주02

6. 도 축 일 자: 2020 년 09 월 07일

7. 도축외퇴인주소: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2길 21

(성 명 : 편명식 (주)팜스토리한냉)

8. 수입소의경우

-수출국가명:

-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도축일까지 6월 경과 여부:

비고:

9.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: 폐기(kg), 식용외의 용도전환(kg)

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, 제12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
규정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.

2020 년 09 월 07 일

검사관 소 속 :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

성명 : 오동진 (서명 또는 인)

(수의사면허번호: 12441)

발급번호: 1102-09070045

축산물 (돼지) 등급판정확인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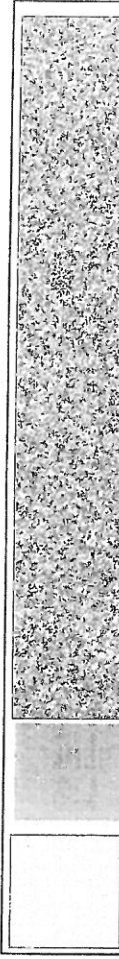
축산물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20년 09월 07일

축산물품질평가사 소속: 제주지원

성명: 이준걸

신창인		성명		편명식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	317-85-08678			
업소명		업소명		(주)팜스토리한냉		업태유형					
주소		주소		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2길 21		043-211-7721					
업체명		업체명		제주LPC		등급판정일자		2020년 09월 07일			
소재지		소재지	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746-31							
(단위: 두)											
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	등급	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	등급	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	등급	
190009903503(1069)		2									
190009903503(1070)		2									
190009903503(1071)		2									
190009903503(1072)		1									
190009903503(1073)		1									
190009903503(1074)		2									
190009903503(1075)		2									
190009903503(1076)		2									
190009903503(1077)		2									
190009903503(1078)		2									
전체:		10두 (1+등급: 0		1 등급: 2		2 등급: 8		등외등급: 0		)	



발급횟수: 1건 발행일자: 2020-09-07 17:50:25

※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(www.ekape.or.kr) "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" 코너를 이용하여
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※ 본 확인서는 축산물유통규칙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
음식점, 식당 등 의무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.